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한정애·정성호·송옥주

허종식 · 서영교 · 박홍근

장철민 · 강선우 · 이소영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 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 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법률 제 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16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를 "19세"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 와 20세"를 "19세"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제11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①・② (생 략)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초혈	
과 골수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1. <u>16세</u> 미만인 사람	1. <u>19세</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u><삭 제></u>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말	
초혈과 골수는 제외한다)은 배	
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	
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u>수 없다.</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①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① -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	
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u>16세 이상인 미</u>	<u>1</u> 9세

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 인 미성년자의 말초혈 또는 골 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 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 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 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 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오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도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도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도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외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19 <i>x</i>
<u>.</u>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
 <삭 제>

 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

 을 적출한 자
- 5. ~ 9. (생 략)
- ②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